

$$\left\{ \begin{array}{l} \mu(\alpha) = \frac{\mu(h-d) + \mu(h+d)}{2} \\ \mu(\beta) = \frac{\mu(h-d) - \mu(h+d)}{2} \end{array} \right. \text{라동면}$$

1	L			6	$\lambda(L)$
2	h		4	$h-d=a$	$\mu(h-d)=\mu(a)$
3	d		5	$h+d=b$	$\mu(h+d)=\mu(b)$
				9	$\mu(\beta) = \frac{\mu(a) - \mu(b)}{2}$
12	$\log \operatorname{ccosh} \mu(\alpha)$		13	$\log \sinh \mu(\alpha)$	$\mu(\alpha) = \frac{\mu(a) + \mu(b)}{2}$
14	$\log \cosh \{\mu(\beta) - \lambda(L)\}$		15	$\log \sinh \{\mu(\beta) - \lambda(L)\}$	$\mu(\beta) - \lambda(L)$
16	$\log \tanh \mu(A)$ $= 12 - 14$		17	$\log \tanh \mu(B)$ $= 13 - 15$	z
18	A		19	B	t

$h > d : t = A, z = B, h < d : t = B, z = A$

$$\left\{ \begin{array}{l} \log \tanh u(A) = \log \cosh \{\mu(\beta) - \lambda(L)\} - \log \cosh \mu(\alpha) \\ \log \tanh u(B) = \log \sinh \{\mu(\beta) - \lambda(L)\} - \log \sinh \mu(\alpha) \end{array} \right.$$

6. 結論

지금까지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e^{u(\theta)} = |\cot \frac{\theta}{2}|$ 즉 $u(\theta) = \log_e |\cot \frac{\theta}{2}|$ 인 函數를 定義하고

② θ 의 圓函數를 $\mu(\theta)$ 및 $\lambda(\theta)$ 의 双曲線函數로 유도하고

③ $u(\theta)$ 의 双曲線函數를 利用해서 斜角球面三角形의 解法의 公式을 유도하고

④ 天文三角形에 對한 應用을 略述하였다.

$\mu(\theta) = \log_e \left| \cot \frac{\theta}{2} \right|$ 와 $\lambda(\theta) = \log_e \left| \cot \frac{1}{2} \left(\frac{\pi}{2} - \theta \right) \right|$ 的 双曲線函數와 그 應用에 關하여

$u(\theta) = \log_e |\cot \frac{\theta}{2}|$ 의 值, 또 이 值에 對한 双曲線函數表를 作成하면 斜角球面三角形 및 天文三角形의 풀이를 容易하게 할 수 있다.

參 考 文 献

- ① 金相輪 球面三角法
- ② 韓國海洋大學 航海科要綱
- ③ G. B. Thomas 著 文源譯 微分積分과 解析幾何學

株式會社의 理事會에 對한 諸問題

全秉翼

Problem concerning Board of Directors of Jointstock Corporation

Abstract

It seems true tha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tic economy has made a great deal of variation in both the type and substance of Joint-stock corporation.

Nowdays, the higer standard of capitalistic economy and the sepe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has necessarily required mobility along with nationality on the side of those who run the bussiness body.

On the demand of mobility and efficiency in the present business, Board of Directors has beeome to occupy on important position inthe organization of Joint-stock corporation.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legal regulation for the system of Board of Directors and its operation have shown great focu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So in order to make more efficientoperation of the system of Board of Directors, This essay will historically explain the consequent result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appear, and preventing it from reducing itself incompetent, the substance of law and more efficient operation Board of Directors are to be discovered through explaning the problems found on the exsisting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islative theory.

<目次>

- | | |
|------------------------|--------------|
| 1. 序論 | 法的根據 |
| 2. 理事會制度의 本質 | ③ 理事의 責務와 決議 |
| 3. 新商法 理事會에 對한 諸問題 | ④ 理事의 兼任 |
| ① 理事의 任期 | 4. 結論 |
| ② 理事會의 代表理事에 對한 業務監查權의 | 5. 參考文獻 |

1. 序論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이 株式會社인 企業의 形態 및 實質에 많은 變容을 招來하였다. 近代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經濟의 高度化가 株式會社企業의 中樞的 經營者層 即 管理機關에 機動的이고 効率의活動을 要請함에 따라 그의 構成 및 權限의 配分에 關한 再檢討가 近代株式會社의 法에 焦點이 되고 있다.

近代株式會社의 經營機構는 意思機關과 管理機關으로 分離하고, 意思機關은 會社資本의 形成에 參加한 사람들을 構成員으로 하는 最上級機關으로써 管理機關을 그 支配下의 下級機關으로

設定함이 어찌한 法系에 屬하는 株式會社일지라도 共通의 現象이다. 換言하면 會社의 最高意思를 決定하는 機關으로서의 株主總會, 그意思決定에 基因하여 會社業務를 執行하는 機關으로서의 理事, 執行機關인 理事의 業務執行과 會計事務를 監督하는 機關으로서의 監事等의 三權으로 分立하였다. 이것은 「레—만」(Lehmann)의 所謂 三分說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沿革의 으로 佛蘭西革命 當時의 立憲政治思想의 영향을 받아서 發展된 產物이라 하겠다. 그런데 管理 機關의 構成은 各國의 社會的·經濟的事情에 依하여 다르며 美國法은 管理機關을 執行機關과 監督機關을 分離하지 않고 있다.

新商法下에서는 從來의 大陸法에 屬하였던 機關體制에다 英美法上의 諸制度를 導入하여 그特色을 이루고 있는데 그內容을 보면,

첫째로, 舊商法上의 株主總會는 株式會社의 最高萬能의 機關으로서 法令中의 強行規定이나, 定款規定에 違反되지 않는限 會社의 運營에 關한 모든 事項을 決定할 수 있었다. 그런데 新商法에 依어서는 株主總會는 商法 또는 定款에 規定된 事項에 限하여서만 決議할 수 있으며, (商361條) 其他의 事項은 理事會의 權限으로 옮겼다. (新株發行 社債發行)

둘째로 舊商法上의 理事는 各者가 單獨으로 會社의 機關을 構成하고 單獨으로 業務執行의 權限을行使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理事會는 그 自體가 任意機關이었다. 新商法上에서는 理事의 權限을 擴大한 結果 그 權限의 濫用을 防止하며 그 權限을 慎重하고 適正하게 行使하기위하여 理事全員으로 構成되는 會議體로서의 理事會制度를 法定化하였다. 그리고 理事에게는 單獨으로 業務執行을 할 수 없고 다만 理事會의 構成員일 뿐이다. 아울러 理事會는 議會體이므로 業務執行自體에는 不適當한 機關이다. 故로 理事會에서 決定된 事項을 執行하고 會社의 業務決定 및 그 實行을 擔當하여 外界에 對하여 會社를 代表하는 代表理事를 두었다. 代表理事는 理事會에서 選出되고, 理事會의 一構成員으로서의 理事의 地位를 保持하고 있으므로 理事會에서 行하는意思決定과 그 執行間의 關聯性을 맺을 수 있는 經營上의 利點이 있다.

셋째로 會社의 監督機關인 監事다. 舊商法上 監事が 業務全般에 對한 監督인 業務監查와 經營의 計數의 表現인 會計監查權을 가졌으나, 新商法의 監事는 會計監查權만을 가지는데 不遇하다.

이와같이 新商法이 株主總會의 權限을 축소하고, 監事의 權限을 會計監查權에 局限함에 따라 理事會의 權限을 확대하게 되었다. (商412條)

即 株主總會中心主義로 부터 理事會中心主義로 變化하였다. 이와 같은 現象은 資本主義經濟의 高度化 및 株式會社資本의 巨大化에 따른 株式分散의 現象이 發生한 때문이라하겠다.

뿐만 아니라 理事會에 強大한 權限을 부여한 것은 少數者の 支配에 依한 經營의合理化를 위한 理論的 要請과 株主總會의 無能化 및 經濟發展에 따른 現實的 要請에 基因하였다. 그러나, 理事會制度의 運營에는 實際上 또는 法文上의 內在的矛盾으로 그 運用이 阻害됨으로 本稿에서는 理事會制度의 本質을 論하고, 現行法上의 內在的 缺陷을 指摘하면서 立法論의 試圖를 促求하였다.

2. 理事會 制度의 本質

理事會(Boar of directors) 理事會全員으로 構成되는 法律上의 議會體로서 業務執行에 關한 會社의 意思를 決定하는 必要의 常設機關이다. 舊商法上에서는 勿論 理事會에 關한 直接의

인 規定이 없을 뿐만 아니라, 法律上의 會社의 機關도 아니었다. 다만 業務執行上の 協議 또는 意思의 決定을 하기위하여 便宜上 定款에 依하여 任意的으로 設定된 議會體이다(舊商260條1項) 本來 英美에서 發達한 理事會 制度는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에 따른 現代 企業의 必然의 인 要請으로서 西歐各國의 會社法上에 채택되고 日本의 改正商法이나, 我們의 新商法上에서도 規定하게 되었다.

理事會制度를 沿革的으로 볼 때 英美的 株式會社도 大陸法系의 株式會社와 같이 和蘭의 東印度會社를 그 起源으로 하고, 있으며, 그 英美會社의 理事會도 亦是 Verwaltungsrat(相談役)로 부터 發展한 것이다. 即 西紀 1963年에 更新된 特許狀으로 會社組織이 어느 정도 民主化 됨에 따라 和蘭會社의 東印度會社에 設定된 主要出者會(Hauptpartcipiten)(혹은 大株主會)는 처음에는 理事의 選任 決算書類의 承認等은 물론이고, 理事의 業務執行의 監督 및 承認의 權限을 가졌다. 이것은 오늘날의 株主總會 兼 理事會(독일에서는 株主總會 兼 監查總會)의 任務를 遂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世紀의 「自由와 平等」思想의 영향 아래 最高機關으로서의 株主總會가 생기고 株主들까지 이에 參加하게 되자, Hauptpartcipiten은 理事의 常設的 顧問으로서 會社의 經營에 監督 및 承認의 權限을 가진 Verwaltungsrat(相談役)가 되었으니, 이는 물론 株主의 利益代表 機關이었다. 그 후 이것은 株主總會의 權限이 擴大됨에 따라 經營管理會(Verwaltungsrat)의 構成員은 總會에서 選出되어 業務執行에의 協力を 第1次의 任務 그 監督은 第2次의 任務로 하는 理事의 常設的 顧問으로서 依然히 存續했다. 그리고 이 Verwaltungsrat가 英美에 있어서는 會社의 重役과 合同하여 理事會(Board of directors)가 되고 독일에서는 監查役會(Aufsichtsrat)가 된 것이다.¹⁾ 그러므로 英美에서는 當初부터 理事會가 執行機關과 監督機關의 統合體로써 두 가지 機能을 發揮하고 會社機關으로서 株主總會와 理事會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沿革의 原由가 大體로 理事會制度를 채택하게 된 契機가 되었고, 各國 株式會社制度 發達의 一般的的 傾向이라 하겠으나, 美國法制下의 理事會制度의 채택에는 特殊한 要因이 介在하고 있다. 即 19世紀前半만 하더라도 各 株主들의 會社에 있어서의 地位는 매우 強固한 것이어서 그 地位는 거의 共同企業의 인 것이었으며, 이와 相關的으로 理事의 權限은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모두 보잘 것 없는 形便이었다. 그러하면 것이 18世紀後半特히 南北戰爭以後 美國產業의 비약적 張長과 巨大企業의 發展에 따라 株主總會의 權限이 축소되고 理事들의 排他的인 經營權限의 確立를 招來했던 것이다. 이러한 發展을 促進한 것은 一般人들이 經營者를 깊이 信賴하고, 自己들의 資本을 經營者에 信託함으로서 株主는 經營에 積極參與하려하지 않는 特殊한 投資心理의 作用이 있음을 물론이다. 美國人們은 受托者の 倫理(信托關係에서)가 確立되어 있고, 法律的으로 理事는 受托者的 地位를 가진다고 解釋되며, 理事의 權限行使 義務의 履行責任等은 이 地位를 基礎로 하여 把握되어 判例 學說도 同一한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重要한 것은 會社財產의 所有가 점점 넓게 分散됨에 따라 그 財產의 所有와 이에 對한支配는 점점 同一의手中에 歸屬하는 일이 적다²⁾는 會社企業發展의 必然의 倫理와 「能率的이고 經濟的인 會社企業의 經營은 支配를 少數人에 集中함으로써 促進된다」³⁾는 經營의 實際的 要請에 依하여 날로 株主의支配權은 축소되고, 理事會의 權限은 擴大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陸法系의 國家에 있어서는 結果的으로는 같지만 그 發生根據가 다르다. 독일의 경우를 본다면 英美的 理事會의 母體인 Verwaltungsrat로 부터 Board of directors(理事會)가 아닌 Aufsichtsrat(監查總會)로 發展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近代的 民主政治思想과 結合하여 總會를 最高機關으로 監事와 理事を 定立시키고, 「견제와 조화」로써 株主의 保護와 會社의 經營의 合

理化를立法論的으로要求했던 독일舊商法 및 우리의 舊商法은 여기에 有來된 것이다. 그러나 大陸法系國家에 있어서는企業의發展에 따라 그自體內에構造的變化, 即企業이大規模하고大資本이必要하게 되면一般大衆의投資가促進되고 이른바株式分散의現象이나타난다. 뿐만 아니라株式分散은또한株主를企業株主및投資株主로變化시켰다. 이러한企業發展이從來의自由主義經濟의一機構로써株式會社理念을統制主義의經濟理念으로修正하려는精神에서無責任하고,無ability한株主의集合體인株主總會의權限을축소하고, 이代身에責任과能力있는理事의權限을增大하는指導原理가채용되었다. 即1937年독일株式法第70條는이原理를明文化하였는데本條1項에서는理事는從來와같이株主總會의下位에있는單純한會社代表및業務執行의機關이아니고,自己固有의權限과責任을가지고會社의運營을擔當할指導者임을明白히하고同條2項에서는理事가數人이있는경우에는그중에서卓越한한 사람을擇하여會社의內部및外部의全關係에있어서指導的地位를確立할수있기되었다.換言하면本規定은理事에게會社指揮의權限과義務를認定하고있는것이그骨子인데,독일株式會社法의精神이나타난것으로重要한意義를가진다. 한편從來에있어서定款에依하여業務執行爲를監事에委讓할수있게함으로써理事가監事에從屬되는것을(獨商264條2項)廢止하여監督機關으로限定하였다.(獨株式法第95條)

이와같은改正에對하여보통「나치스」政治原理인指導者原理를企業理論에의導入이라고말하고있으나,이는오히려政治的立場에서본說明에不適하고,指導者原理의導入이란形式의으로이루어질수없는것이니,이미그當時독일의企業體制와經濟界的現實이그構造上の變革을일어키고理事의地位強化를要求하고있었다는것,따라서그렇한法의規制는어디까지나독일의經濟構造의發達變化에適應한合理的解을試圖한것이라는것을看過할수없는것이다.特히大會社일수록理事의힘이强大해서大會社의理事는容易하게再選되어그地位의恒久化를招來하고드니어는理事王國의事態가벌어지게된것이다.이러한경향은大陸法系에屬하는諸國에普遍的인制度라 할수있겠으나,佛蘭西에서도支配的인것이었으니,1940年法및1943年法이所謂議會制의原則을採用하여業務執行機關으로서의理事會를法定하고責任있는首長으로써社長制度를創設한것으로도알수있다.

따라서우리商法도舊商法이1867年독일舊商法이採用하였든株主總會中心主義를포기하고理事會制度를採用하여理事會centerism로한것은이미고찰한바와같이理論上大陸法制下에서도株式會社또는企業의development過程에서經營者集團(指導者原理)으로서의理事會制度를確立하지않을수없게되고,이렇한理論의인要請은英美制度를導入하려는戰後의現實의인要請과結合하여理事會制度의採用이必然的結果가되었다.

以上과같이大陸法系와英美法系에서의理事會制度를採用한沿革의原由가存在하지만,보다더important한趣旨는다음과같은消極和積極兩面에서effeクト를거두는데서찾아볼수있다.

첫째消極의인效果란業務執行機關의權限濫用을防止하는데있다.即資調金達의便宜를確保하기위하여授權資本制度를採用하여定款上認定된一定의範圍內에서株主總會의決議를하지않고、理事會가新株를發行할수있어며、無額面株式發行경우(新商法의規定은없단)社債를發行할수있는경우등의理事의權限이광범해질때株主總會,監事의權限을축소되고理事의自由裁量의餘地가넓어진다.그러므로이렇한强大한權限의行使을理事單獨人에맡기지않고、英美法系에서와같이複數人の議會體(Board)인理事會에맡겨權限行使의適正慎重을期하게하고나아가서그責任의所在를明確히한에있다.

둘째로 理事會制度의 積極的인 効果란 有能한 數人の 理事의 知能과 經驗과 힘을 總動員하여 結合함으로써 資本主義의 競爭場에서 絶對로 必要한 企業의 創意性과 經營의 機動性 및 効率性을 確保함에 있다. 企業이 大規模화하고 大資本이 必要하게 되면 一般大衆의 投資가 促進되고, 있른바 株式分散의 現象(Disversion of Stock ownership)이 나타남에 따라 株主의 量的質의變化를 가려온다. 即 株主의 數가 激增하는데 그치지 않고, 支配株主가 아닌 投資株主로 性質上 變化를 가져왔다. 이들 株主의 大部分은 企業經營에 無關心하고, 實際上 參與할 能力도 없으며, 보다 多은 利益配當과 보다 有利한 株式賣買만을 바라는 局外者的 世位에 스스로 만족한다. 뿐만 아니라 株式分散이 認定되고 株式讓渡自由原則이 수반되고 있는 以上 株主가 一朝一夕에 變動하고 이로 因한 株主들의 會社事情에 對한 無知 無經驗한 狀態에 있고 보니 必然的으로 會社의 經營은 「專門的 經營者」(理事)에게 專屬되지 않을 수 없다.

3. 新商法上의 理事會에 對한 諸問題

新商法이 理事會制度를 採用함에는 理論의in 要請과 實際의in 要請의 結合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法自體의 內在的 矛盾 때문에 理事會制度의 本質에 違背되는 結果가 되므로 다음 몇 가지 問題를 提起하고 立法論의 解決을 促求하는 바이다.

① 理事의 任期

舊商法에서는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였다. (舊商法273條)

그리나 現行商法은 會社의 理事 및 監事와의 關係는 信任關係의 基礎위에 있으므로, 理事와 監事의 任期를 단축하여 改選의 時期를 빨리 함으로써, 株主總會의 信任을 묻는 機會를 많게 하기 위하여 理事는 2年 監事는 1年으로 定하였다. (新商法385條409條)

그런데 會社는 監事에 있어서는 每年 또 理事에 있어서는 2年마다 改選을 하고, 이를 登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會社는 어떻한 때자도 株主總會의 決議로 不適當한 理事는 自由로 解任할 수 있으므로(新商法385條), 任期를 단축하여 改選의 機會를 많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理論上의 必要性도 없고, 오히려 改選에 수반되는 會社의 번잡한 節次나 登記費用을 節約하고 나아가서는 理事의 世位를 確固히 하며, 經營事務에 보다 安定의이고 永久性 있는 計劃樹立을 위하여는 任期를 延長하는 것이 會社의 利益을 위하여 適當하리라 믿는다. 이러한理論은 現代의 福祉社會國家에 있어서 政府는 보다 安定의in 政策樹立을 위한 法制를 要求하고 있는 것과 同一하다. 또 理事와 監事의 任期를 다르게 한 것은 理論上 空論에 不遇하다. 即 理論上으로 보면 監督者와 被監督者를 同一任期를 함으로써 理事와 監事의 個人的感情의 融合으로 監督의 忠實을 期할 수 없다는 理由이나, 實際上이나 法文上으로 任期를 다르게 하드라도同一人이 再選되는 경우가 許多하다. 아울러 現行法上의 監事에는 事務監查權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個人的感情의 融合도 우려되지 않으므로 理事나 監事의 任期를 同一하게 하여도 無妨하다고 생각한다.

② 理事會의 代表理事에 對한 業務監查權의 法的根據

理事會는 代表理事에 對한 監督權(監查權)이 있다고 하는 것은 一般論의으로 肯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 理論的 根據에는 學說上 一致되는 것이 없다. 어떤 學說에 依하면理事會는 業務執行에 關한 全權限을 가지고 그意思決定을 할 뿐만 아니라, 執行行為도 하는 것이다理事會自

體가 執行行爲를 함에는 當然히 理事會會員이 共同하여 行動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法은 實際의便宜를 위하여 業務執行權限을 代表理事에게 委任한 것이다. 그르므로 代表理事의 業務執行權限은 理事會에서 有來한 것이고, 그의 世位는 本來의 으로理事會의 受任者 또는 代理人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理事會의 代表理事에 對한 監督權도 여기에서 有來한다고 한다. 그러나 法文上으로이 學說의 妥當性의 根據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否定하는 法文이 있다. 即「會社의 業務執行은 理事會에서 決議한다」(新商 393條)라고 하며 理事會는 意思決定機關이지 執行機關이 아님을 明白히 하고, 執行機關인 代表理事會를 必要로 하고 있다. 아울러 「會社는 理事會의 決議로 會社를 代表할理事를 選定해야 한다」(新商389)라고 하여 代表理事는 理事會의 機關이 아니고 그 自體 法上の 世位를 가진 會社의 機關이다. 또 理事會는 항상 活動狀態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業務執行 할 수 없는 것이다. 他의 學說에 依하면 業務執行에 關한 意思決定機關과 그意思決定에 基因하여 具體的으로 執行하는 機關과의 分化를 認定하고 前者에는 理事會, 後者에는 代表理事를 두고, 理事會는 代表理事를 選任 할 수 있으므로(新商389條) 解任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으로 理事會는 代表理事에 命令監督할 수 있다. 即 이것은 監事의 業務監查權에 代身하는 理事會가 가진 業務監查權이라 할 수 있겠다. 그르므로 現行法上에서는 後說이 前說보다 理論的으로 그 妥當性이 크다 하겠다.

③ 理事의 員數와 理事會의 決議

現行法上의 理事會는 理事會會員으로 構成 된 合議體 또는 議會體의 機關으로서 業務遂行의 決定權을 가지고, 營業의 基本方針 또는 一般的인 營業政策을 決定한다. 代表理事는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이것의 具體化시키는 것이므로 代表理事의 執行行爲에 對하여 理事會는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即 理事會의 決議한 事項에 따라 會社의 業務가 運營되었는가의 與否를 不斷히 監視하고 만약 代表理事가 不適當 하면 解任할 수 있는 것이 監督權의 內容이라 하겠다. 그런데 理事會의 代表理事에 對한 監督權의 內容은 舊商法上 監事が理事에 對한 業務監查權과 여리가지로 다르다. 即 從來의 監事의 業務監查權은 單獨의으로 行使 할 수 있으나 理事會가 가진 業務監查權은 理事會라는 議會體(Meeting of Boardsdirectors)에 依하여 行使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業務執行에 對한 理事會의 決議는 定款으로써 決議의 要件을 加重하지 않는限理事全員의 過半數의 決議로 해야한다(新商391條). 아울러 現行商法을 보면 「理事는 3人以上이어야 한다」(新商383條)고 하여 最小限의 理事의 員數를 法文化하고 있다. 그런데 이 法文을前提로 하여 具體的인 例에 依하여 檢討하여 보면, 만약 一部理事가 代表理事의 業務執行行爲에 關하여 報告를 要求할려고 하는 경우에 理事會의 過半數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即 理事會의 員數가 3人이고, 그중 2名이 代表理事에 選任되었다면(新商389條) 2名의 代表理事는 利害關係人으로써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을(新商368) 뿐만 아니라, 그 議決權은 過半數算定의 基礎가 되는 議決權에 算入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矛盾으로 代表理事가 理事會의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을 無視한 行動을 하드라도 設例와 같은 경우는 理事會의 業務監查權은 그 行使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代表理事의 問責의 唯一한 方法인 解任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現行法이 意思機關으로서의 理事會의 構成員인 地位와 執行機關인 代表理事의 世位를 無條件兼任하게 하여 理事會制度의 根本의 意義를 没却한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立法論의으로 代表理事와 理事會의 構成員인 一部理事와의 構成比率을 法文化하여 理事會를 構成한다면 理事會라는 議會體의 本質을 保障할 수 있는 結果가 될 것이다.

④ 理事의 兼任

現行商法下에 있어서는理事의構成員은大部分은內部理事이고, 또理事가經理部長이라는가營業部長을兼하고 있다.通說의見解에依하면이때의理事의地位는理事會의構成員으로서의地位나商業使用人の地位를兼任하고있으므로理事會의構成員으로서의地位에있어서는代表理事를監督또는支配할수있고,他面商業使用人으로서의會社業務를執行함에있어서는代表理事의指揮命令에服從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다.이와같은例는極斷的인現象이될지모르겠지만現行法上可能한것이므로전혀그例가없는것은아닐것이다.以上과같은通說의見解에依한다고하면어떻게commercial使用人の地位에있는者가代表理事와同等한資格에서理事會의構成員으로서의理事의權限과機能을發揮할수있을것이며,또理事의地位에있는者가(代表理事와同等한資格)commercial使用人으로서의代表理事와指揮命令에服從하리라期待하겠는가現行商法上理事會制度는이러한矛盾과缺陷을內包하고있음을否定할수없다.그러나法의本質이나時代의變化에따라理事會制度는株主總會의無能化에서오는執行機關의獨自的地位의確立과그權限의強化를招來하게되었다.換言하면企業經營에있어서의經濟의인힘이結局은少數의經營擔當者에게集中하게되었다.이러한必然的인結果에對한法의表現이곧數人の理事로構成되는理事會를法定機關화하고強大한權限을歸屬하게하였다.그러나理事會의權限이아무리强大하더라도民主主義運營에阻害되거나理事會의專斷에依한株主의不利益한結果를招來해서는안된다.따라서議會體機關으로서의理事會의本質에充實한result를맺기위하여는監事が支配人其他使用人을兼할수없는바와같이(新商411條)理事에게도兼任禁止에對한規定을두지않으면안된다.이것은理事會의構成員으로서의理事의職務執行을保證하기爲한方法이라하겠다.

4. 結論

理事會制度는現代企業이지닌機動性과合理性의要請과 함께行政權強化를指向하는文化主義國家의株式會社의機構에絕對的인位置를占하고있다.마치現代民主國家에있어서의行政權의強化傾向과같이業務執行機關으로서의理事會는株式會社運營上에大權을장악하게된것이다.總會를最高機關으로監事와理事와理事會를둘으로서경제와調和로써株主의保護와會社의適正한運營을꾀하든資本의株式會社에있어서의素朴한民主主義는이미낡은原理가되고말았기때문이다」그것은法과社會的,經濟的,現實과의乖離를除去하려는賢明한努力의表現이기도하다.어떻든株主總會의中心主義는한갓necessary한形式으로存在할것으로修正되고그에代替된理事會center主義가世界各國의株式會社法上의basic principle이되었다.그러나들이켜생각해보면,各國의理事制度의機能및成果에는疑問의餘地가없지않다.물론各國의法의傳統과現實의要請에따라서相異한것이오히려當然한일이기도하겠지만는大體로보와理論上이나,實際上으로理事會의權限은實質적으로業務執行自體를實行하는代表理事에依하여侵蝕당하고있고,業務執行의遂行으로부터一步後退의傾向이있다.마치株主總會가會社運營의necessary한形式으로存在하듯이理事會self體도無能化되고있다.따라서理事會制度를effecive으로運營하기위하여는意思決定機關의面에서나執行機關의面에서檢討하지않으면안된다.동시에兩機能의關係를明確히함이要請된다.

따라서本稿에서理事會制度가나타난必然의인result를沿革의으로說明하면서理事會制度의

本質을 찾았으며 나아가서는 理事會制度의 無能化에로의 機能을 防止하기 위하여 理事會와 代表理事에 對한 監督權의 根據를 明白히 하고 그 內容 및 行使方法을 明文化하여 解釋上異義를 一掃하고 다음에 理事會의 構成員인 代表理事의 構成比率을 法文化할 것을 試圖하였다. 아울러 理事의 任期에 對한 것과 理事が 商業使用人인 地位를 兼하는 慣行은 現行商法의 管理機關體制가 舊商法上의 管理機關體制와는 理念上이나, 法形式上 相異한 것이므로 監事が 支配人 其他의 使用人을 兼할 수 없는 바와 같이 理事에게도 兼任을 禁止할 것 等을 立法論的으로 解決을 促求했다. 이 以外에도 理事會의 運營을 위하여 證券市場의 發展稅制의 根本的改革, 計理士制度의 質的量的上이 要求되는 바이다.

5. 參考文献

- ① 大隅健一郎 株式會社法 變遷論 31面, 231面
- ② Berle and Means.: 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57) p69
- ③ Stevens: Handbook of the law of Corporation (1949) p949
- ④ 徐燉玗 商法 105面
- ⑤ 石井照久 企業形態論 146面
- ⑥ 徐燉玗 前掲書 109面
- ⑦ 株式會社法の改正の基本問題 497面
- ⑧ 大隅健一郎 商法(上) 76面 徐燉玗 株式會社法基本問題 554—56面
- ⑨ 株式會社の改正の基本問題 498面



體育의 場所에 따른 分類와 그 重要性에 關하여

崔 普 烈

<目次>	
序論	3. 社會體育
1. 家庭體育	4. 軍隊體育
2. 學校體育	結論

序論

인간은 전생활의 半을 家庭에서 보내는데 特히 體位向上에 유의 함으로써 健康한 國民의 指標가 함양된다는 것은 東西古今의 眞理이다. 그러므로 家庭體育의 健全한 發展을 꾀하려면 行政 당국은 먼저 家庭으로 부터 침투하여 社會의 氣風을 造成하여야 할 것이다.

全人的 人格形成을 目標로 하는 學校 體育에서는 教育의 必須不可缺한 體育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排除하고, 指導者 不足과 運營의 妙를 期하여야 하며, 選手養成의 위주의 學校 體育이 아니라 全體學生의 體育運動을 할 수 있는 制度와 여전이 조성되어야 겠으며 社會 體育은 學校體育의 바톤을 받아 이룩되는 一連의 과정에서 보면 學校體育이 重點的으로 취급 되어야 함은 두 말할나위도 없다.

社會의 各機關이나 工場 企業體는 국가의 強力한 體育行政이 뒷받침하면, 社會體育振興이 크게 용성할 時點에 있다. 軍隊體育은 國家와 民族의 방패로서 軍은 맡은바 使命을 다하려면 強力한 體力과 國內外 情勢에 비친 軍隊體育의 動向과 國家의 安保와 國民의 平和를 유지 보존하려면 軍體育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1. 家庭體育

1) 家庭體育의 重要性

國家의 最少單位는 家庭이며 家庭을 바탕으로 하여 社會와 國家가 形成된다. 家庭이 健康해야 社會가 健康해 진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家庭의 健康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큰 것이다. 그리고 母體의 健康은 子女의 健康과 直結되고, 子女들의 健康은 國家와 社會가 要求하는 人間像으로 發展할 수 있기 때문에 獨일은 第2次大戰 敗戰後 「國力은 母體에서」라는 술로간을 내걸고 女性體育運動을 嘉勵하여 오늘의 世界強國으로 登場하게 된 要因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家庭體育의 重要性을 認識하여 家庭體育의 積極的인 嘉勵와 社會氣風의 造成을 위하여 그問題點과 새 方向을 研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2) 家庭體育의 方向

家庭은 社會와 國家와 共同體이다. 우리 나라는 자기의 職務에서 벗어나 여가 시간(Leisure